제주지방병무청 종합감사 결과

2022. 8.

병무청

감 사 담 당 관 실

Ⅰ. 감사결과 요약

□ 감사개요

○ 감사기간: 2022. 7. 18. ~ 7. 22.(5일간)

○ 감사인원: 5명

□ 기관현황 (2022. 6. 30. 기준)

○ 직원 현황 : 정원 37명 / 현원 35명 * 6급 직원 2명 직무대리 운영

Ⅱ. 감사결과 지적사항

1. 감염병 확산 예방 조치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운영 개선

□ 관련 규정

○ 「병역법」 제12조

-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·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

○ 「병역판정검사 규정」 제37조, 제108조

-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신체등급 5급·6급 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신검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규정('21. 2. 15. 개정)

□ 문제점

○ 제주지방병무청은 [표 1]과 같이 신체등급 5급 대상자 8명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여 판정 처리

[표 1] 5급 판정자 중 심의 미실시 내역

연번	병적번호	성명	검사일자	신체등급	국방부령	부령코드
1			2021. 7. 9.	5	1043	131-다
2			2021. 7. 16.	5	1043	056-가-1)-나)
3			2021. 7. 21.	5	1043	271-나
4			2022. 3. 21.	5	1061	064-나-2)
5			2022. 3. 21.	5	1061	241-가-3)
6			2022. 3. 23.	5	1061	241-가-3)
7			2022. 3. 24.	5	1061	079-나
8			2022. 3. 24.	5	1061	171-나

○ 이러한 요인으로 중앙신검소 의뢰 대상자에 대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지방위원회 심의 의뢰를 누락하고도 병역판정 검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고 최종 판정이 되는 문제점 확인

2. 현역병 입영대상자 수형사유 병역처분변경 소홀

□ 관련 규정

○ 「병역법」 제21조,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

- 수형자로 형량과 사유에 따라 보충역,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거나 상근예비역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규정

수형사유 병역처분변경 및 상근예비역 우선선발 기준

병역처분 선발기준	형의 선고 기준	제외 사유
보충역	① 6개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②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	병역의무 기피, 감면 목적으로 신체 손상, 속임수를 쓴 징역형 선고자
전시근로역	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	
상근예비역	①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②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	병역법, 도로교통법, 교통사고처리 특례법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

□ 문제점

○ 감사기간 중인 '22. 7. 14. 기준 제주청 현역병입영 대상자 4,110명에 대하여 수형 사실을 조회한 결과 아래 [표 2]과 같이 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인데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관리중인 사항 확인

[표 2] 병역처분변경 대상자

인적사항	죄명	형량	확정일자	비고
	상해 등	징역 1년2월, 집·유 1년6월	2021. 4. 21.	보충역
	사기방조 등	징역 1년6월, 집·유 2년	2020. 6. 20.	보충역
	특수상해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	징역 8월, 집·유 2년 징역 4월, 집·유 1년	2021. 8. 25. 2022. 2. 16.	보충역 (경합범)
	청소년보호법위반 등	징역 10월, 집·유 2년	2020. 9. 17.	상근예비역

3.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한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 소홀

□ 관련 규정

○ 「병역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

- 최초 7급 판정받은 날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규정

□ 문제점

○ 경남청은 [표 3]과 같이 의무자(○○○)에 대해 7급 판정을 하고도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, 제주청은 위 의무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경남청에 이관하지 않고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관리

[표 3] 신체등급 7급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

인적사항	재신체검사 사유(병명)	병역판정 및 귀가 과정
	정신건강의학과 질환 (851호 105.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)	① (2015. 3. 25.) 7급 12개월
		② (2016. 4. 5.) 7급 11개월
		③ (2017. 3. 27.) 현역대상
		④ (2018. 11. 27.) 입영 후 귀가
		⑤ (2018. 12. 26.) 7급 8개월(경남청)

4.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카드 작성 부적정

□ 관련 규정

○ 「병역법」 제94조

-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 및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
- 또한 「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」 제53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을 편성하고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 대하여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카드를 작성·관리하도록 규정

□ 문제점

○ 제주청은 「'22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(현황)」에 따라 개인별 「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카드」의 단계별 소집부대 및 계획인원 등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[표 4]와 같이 불일치하게 작성하여 관리

[표 4]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카드 불일치 내역

연번	일시/부대	불일치 내역	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(正)	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카드(誤)
1	***/*****	계획인원	75명	105명
2	***/*****	소집부대	*****	*****
3	***/*****	계획인원	19명	20명
4	해당부대 없음	소집부대	-	*****
5	***/*****	계획인원	33명	32명

5.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2세 관련 업무처리 소홀

가. 국외이주자의 체류자격 확인 소홀

□ 관련 규정

○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49조

- 25세 전에 본인, 부모의 영주권 등으로 체류자격을 얻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
- 또한 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」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국외이주자에 포함하여 출입국 등 신상변동 사항을 관리하도록 규정

□ 문제점

○ 제주청은 [표 5]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 확인 없이 임의로 국외이주자로 등록·관리(9명)

[표 5] 체류자격 확인 없이 국외이주자로 관리하는 대상

연번	성명	생년월일	국외이주등록 사유	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
1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국외이주(영 제149조)
2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국외이주(영 제149조)
3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국외이주(영 제149조)
4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국외이주(영 제149조)
5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국외이주(영 제149조)
6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일본국거주
7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국외이주(영 제149조)
8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국외이주(영 제149조)
9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국외이주(영 제149조)

나. 재외국민2세의 국외여행허가 처리 소홀

□ 관련 규정

○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8조 및 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」 제14조

- 병무청장,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영주권,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재외국민2세를 확인
- 또한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보고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하도록 규정

□ 문제점

○ 제주청은 [표 6]의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 14명에 대하여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하고 병역판정검사 등을 연기하여 관리하지 않고 감사기간 중인 2022. 7. 18.까지 같이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이주자로 관리

[표 6] 국외여행허가 사항 없는 재외국민2세 명단

연번	성명	생년월일	국외이주등록 사유	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
1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2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국외출생
3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국외출생
4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5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6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7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8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9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10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11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12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13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
14			영 제149조제1항제2호(본인)	재일동포 영주